

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의안번호 제970호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동의안은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할 경우,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,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신설된 재단으로서 “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” 제6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, 사회서비스 직접제공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, 종사자 직접고용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으로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2020 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